

2020 - 3242

(2) () ()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465호('04.12.31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916호('17.12.28.)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결정된 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3일
서울특별시 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				(㎡)	
	-	2	362	208,636.4	2005 - 480 (' 05.12.29.)

2. 용도지역 · 지구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4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5. 건축물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6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■ 열람기간 :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

■ 열람장소 : 씨티스퀘어 빌딩 12층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97)
중랑구 도시계획과(☎ 02-2094-2175)

■ 관련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■ 기타사항 : 열람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

2020 - 3249

‘도로법’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자에게 ‘질서위반행위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 기본법’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 및 ‘지방세기본법’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3일
서울특별시

1. 건 명 :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
2. 근 거 : ‘도로법’ 제117조 제1항 및 ‘동법 시행령’ 제105조,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기본법’ 제33조, 제61조,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가.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

	14-3* ()	: 2020-09-06 10:48 : : : (:11.5t, :1.5t, 06 50**)	: 50 : 2020-10-27 : 2020-12-31
	47 2* (가)	: 2020-09-08 09:57 : : : (:24.65t, :4.65t, 83 94**)	: 50 : 2020-10-27 : 2020-12-31

4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5. 납부기한 : 2020. 12 31